

「고흥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「지방자치법」 제77조와 「고흥군의회 회의규칙」 제23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 합니다.

2023년 11월 21일

고 흥 군 의 회 의 장



고흥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제안이유

- 주민의 직접 참여를 보장하고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의 제고함을 목적으로 제정한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이를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며 또한 불합리한 조항등을 현실에 맞게 재정비하여 조례의 명확성을 기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“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” 를 “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읍·면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어 제출하여야 한다.” 로 개정(안 제7조)
- “의회사무과” 를 “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의회사무과” 로 개정(안 제8조제2항)

- 기존,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
“의장”을 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내에 의장”로 개정
(안 제10조제1항)
- 제10조제2항 신설(안제10조제2항)
- 제12조(수리·각하 결정 및 통지)를 신설(안 제12조제1항~제3항)
- 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, 제3호 및 제4호 신설(안 제13조3호~4호)

3. 일부개정조례안 : 붙임

4. 조례안 예고기간 : 2023. 11. 21. ~ 2023. 11. 26.(6일간)

5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기관·단체 또는 개인은 2023년 11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흥군의회 의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의견 제출사항

- 1)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2) 의견 제출자의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), 주소, 전화번호
- 3) 기타 참고사항 등

나. 의견 제출방법 : 서면, 전화, 팩스,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도 가능

다. 의견 제출받는 곳

- 1) 우편 : (59542)/ 전남 고흥군 고흥읍 고흥군청로 1,
고흥군의회의회장 (참조 : 의회사무과장)
- 2) 전화 : 061-830-5032, 팩스 : 061-830-5595

붙임 1. 고흥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.

2. 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서식 1부. 끝.

[붙임 1]

고흥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고흥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의 “법 제9조에 따라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” 를
“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” 를
“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읍·면
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어 제출하여야 한다.” 로 개정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의회사무과” 를 “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의회사
무과” 로 개정한다.

제1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의
장” 을 “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내에 의장” 으로 하며,
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

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서명이 다음 각
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서명을 무효로 결정하고
청구인명부를 수정한 후 그 사실을 즉시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
다.

1.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서명
2.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
3.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권이 없는 사람이 받은 서명
4. 한 사람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
경우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

제12조를 제13조로 하고, 같은 조(중전의 제12조)에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
4. 제2조제1항에 따른 교육·홍보·지원 등 사무

제12조(수리·각하 결정 및 통지) ① 의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(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)부터 14일이 지난 날(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열람 기간이 끝난 날)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민조례청구에 대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리·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.

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(의견 준비기간 14일 이상)를 주어야 한다.

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·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2024.2.17.이후 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<p>제7조(청구인명부) <u>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.</u></p>	<p>제7조(청구인명부) <u>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읍·면 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어 제출하여야 한다.</u></p>
<p>제8조(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)</p> <p>① (생략)</p> <p>② 의장은 <u>의회사무과</u> 및 군청 민원실과 읍·면 민원실에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공개된 장소에 갖추어 두어 열람하게 해야 한다.</p>	<p>제8조(청구인명부의 공표 및 열람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<u>공표한 날부터 10일간 의회사무과</u>----- ----- ----- -----</p>
<p>제10조(이의신청)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<u>의장</u>에게 제출해야 한다.</p>	<p>제10조(이의신청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<u>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 기간내에 의장</u>----- -----</p>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신설></p>	<p>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서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서명을 무효로 결정하고 청구인명부를 수정한 후 그 사실을 즉시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청구권자가 아닌 사람의 서명 2.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3.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권이 없는 사람이 받은 서명 4. 한 사람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개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 그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다 5.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 외의 기간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서명요청 제한기간에 받은 서명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신설></p>	<p><u>제12조(수리·각하 결정 및 통지)</u></p> <p>① <u>의장은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(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)부터 14일이 지난 날(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열람기간이 끝난 날)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주민조례청구에 대해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수리·각하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대표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.</u></p> <p>② <u>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미리 대표자에게 의견을 제출할 기회(의견 준비기간 14일 이상)를 주어야 한다.</u></p> <p>③ <u>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서명수에 현저하게 미달되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·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.</u></p>

[붙임 2]

조례안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

□ 자치법규명: 고흥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○ 성명(단체명) : _____ (서명 또는 날인)

○ 주 소 : _____

○ 전 화 번 호 : _____

자치법규안 내용	찬 성 여 부		의 건	비 고
	찬성	반대		